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계약청약서



(중소기업중앙회 보관용)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귀하

제출일 :           년       월       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내지 제121조 및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 약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을 청약합니다.

1. 청약자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 주민등록번호						
			3. 휴대전화			4. E-mail			
5. 자택주소	* 비거주자는 관련법에 따라 소득공제가 제한됩니다.			6. 자택전화					
7. 업체명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체명 기재			8. 사업자등록번호					
				9. 법인등록번호					
10. 업체주소				11. 업체연락처		전화번호			
12. 사업상의 지위(√표)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자 <input type="checkbox"/> 법인사업자 <input type="checkbox"/> 무등록사업자					F A X			
13. 개업년월일	년    월    일		14. 사업의 종류 (사업자등록증상의 주된 업태와 종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업태					
15. 상시근로자수	명		(일용 근로자 및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0" 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16. 연락처선택(√표)		<input type="checkbox"/> 자택주소 <input type="checkbox"/> 사업체 주소			
17. 청약금 (부금월액)	(부금월액은 최저 50,000원에서 10,000원 단위로 최고 1,000,000원까지이며 분기납의 경우 3개월분의 부금을 매 분기 납부합니다.)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18. E-mail 수신동의		예 ( ) 아니오 ( )			
				19. S M S 수신동의		예 ( ) 아니오 ( )			
20. 신분증 확인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증(발급일자)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증(발급일자)			<input type="checkbox"/> 운전면허증(면허번호)					

예금계좌 자동이체 지정·신청							
예금주	거래은행		이체일		월 납	매월 ( )일	
계좌번호					분기 납	매분기 ( )째달 ( )일	
1. 위 예금계좌를 공제부금의 납부·공제계약대출금의 상환·공제금의 수령 등 공제계약상의 일체의 거래에 관한 계좌로 지정·신청합니다. 2. 위 예금계좌의 잔고가 이체일에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금이 연체된 것으로 보며, 연체 해소를 위해 익일부터 일정기간 이체 처리합니다. 3. 위 예금계좌자동이체신청에 의하여 납부한 부금 금액에 대하여는 중앙회가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며 이체된 부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약관의 주요 내용**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청약일 또는 청약금 납부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중앙회가 약관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계약자가 부금의 납부를 12개월 이상 연체한 때는 중앙회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율] 기준이율은 공제금의 지급률 및 기타 각종 지급·수취이율의 기초가 되는 이율로 중앙회에서 매 분기 초일에 정하여 3개월간 적용되며 최저보증이율은 2%입니다.  
 [공제사유] 중앙회는 계약자의 폐업, 사망, 질병·부상에 의한 법인 대표자의 퇴임, 만60세 이상으로 부금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 계약자가 공제금 지급청구 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공제금] 공제금은 부금납부월수가 6회 이하인 경우에는 부금 원금을 지급하며 7회 이상인 경우에는 부금에 일정 이율로 계산·적립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간주해약환급금은 부금납부월수가 36회 이하인 경우에는 부금원금을 지급하며 37회 이상인 경우에는 부금에 일정 이율로 계산·적립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일반해약환급금은 부금납부월수가 48회 이하인 경우는 원금보장이 안되며, 49회 이상인 경우 약관에 정한 바에 의해 납부기간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 관련 세제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거, 납입부금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되며, 공제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소득이 소득공제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등 관련 세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부금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가입후 5년내 해지시 해지가산세를 추가로 원천징수합니다. 공제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확인 전화 안내 :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회 콜센터에서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받았는지를 전화로 확인할 예정이며, 귀하의 사정으로 통화 연결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화를 받을 의사가 없다고 간주하고 청약하신대로 계약은 유지할 것입니다.

위의 예금계좌 자동이체 지정·신청, 약관의 주요 내용, 비거주자의 소득공제 제한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숙지하였습니다.		√ 청약자	√ 서명
가입권유자 성명	가입권유자 구분(√표)	<input type="checkbox"/> 단체 <input type="checkbox"/> 개인	전화번호
소속단체명	가입권유자 코드		

